

1. 住宅建設基準 等に 關한 規程中 改正令

大統領令 第13,984號, 1993. 9. 27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3호 내지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일반목욕장
4. 구매시설
5. 생활시설

제9조제2항본문중 “새마을유아원·보육시설”을 “보육시설로 하고, 동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로서 당해 공해공장의 업종이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형업종으로서 건설부장관이 상공부장관 및 환경처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업종의 공장인 경우에는 당해 공장으로부터 30미터이상 떨어진 곳에 공동주택등을 배치할 수 있다.

제9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등을 배치하는 경우 공동주택등과 제2항

각호의 시설사이의 주택단지부분에는 수립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7층이상인 공동주택에는 이사짐등을 운반할 수 있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화물용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7층이상 15층이하의 공동주택에는 화물용승강기에 갈음하여 인양기를 설치할 수 있다.

1. 적재하중이 0.9톤이상일 것
2. 승강기의 폭 또는 너비중 한번은 1.35미터이상, 다른 한번은 1.6미터이상일 것
3. 계단실형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계단실마다 설치할 것
4. 복도형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00세대까지 1대를 설치하되, 100세대를 넘는 경우에는 100세대마다 1대를 추가로 설치할 것

제31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주택단지의 입구에는 당해주택건설공사의 사업주체·설계자·시공회사·감리회사·사업승인일·사용검사일·공사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록한 머릿돌 또는 기록탑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50조의 제목“(구매시설)”을“(구매시설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 제2항 및 제3항을 삭제하고, 동조제4항중 “구매시설로서 하나의 건축물에 설치하는 면적이”를 “하나의 건축물에 설치하는 구매시설등의 면적이”로 한다.

①주택단지에 설치하는 구매시설 및 생활시설(이하 “구매시설등”이라 한다)의 면적의 합계는 매세대당 6제곱미터의 비율로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그 비율로 산정한 구매시설등의 면적이 50제곱미터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구매시설등의 면적을 50제곱미터로 할 수 있다.

제51조를 삭제한다.

제5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2(유치원) ①1천세대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유치원을 설치할 수 있는 대지를 확보하여 그 시설의 설치희망자에게 분양하여 건축하게 하거나, 유치원을 건축하여 이를 운영

하고자 하는 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주택단지로부터 통행거리 300미터이내에 유치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치원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하되, 당해 주택의 사용검사시까지 건설하여야 한다.

1. 유치원은 학교시설·설비기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고, 유원장·교실·유희실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실에는 충분한 일조 및 채광이 확보되도록 할 것
2. 유치원은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 각호의 시설로부터 50미터이상 떨어진 곳에 이를 배치할 것
3. 유치원과 다른 용도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에 함께 설치하는 때에는 유치원의 출입구·계단·복도 및 변소등을 다른 용도의 시설(보육시설 및 사회복지관을 제외한다)과 분리된 구조로 하여 유아교육·보육환경등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할 것

제55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500세대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상시 30인이상의 영유아를 보육할 수 있는 시설규모를 갖춘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을 당해 주택의 사용검사시까지 설치하여야 한

다. 다만, 당해 주택단지로부터 통행거리 300미터이내에 동일규모이상의 보육시설이 있거나 당해 주택단지안에 동일규모이상의 보육시설이나 그와 유사한 시설을 갖춘 사회복지관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별표 2] 및 [별표 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①(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사업계획승인등을 얻은 사업에 관한 경과조치)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었거나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한 주택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별표 2]

주택자재의 등록품목(제58조제2항 관련)

품 목	품 명
1. 점토소성제품	보통벽돌
2. 시멘트가공제품	시멘트벽돌 속빈시멘트블록
3. 콘크리트제품	콘크리트조립식부재(벽판·바닥판·지붕판·기둥·보·계단 기타 이와 유사한 주요구조부용 부재) 경량기포콘크리트조립식부재(벽판·바닥판·지붕판)

[별표3]

주택자재생산업등록기준(제58조제2항 관련)

업 종 별	등 록 기 준
1. 점토소성제품(보통벽돌)생산업	가. 배합 및 토련시설 (1)분쇄기 : 1대이상 (2)혼합기(토련기) : 1대이상 (3)성형기 : 1대이상 (4)절단기 : 1대이상

업종별		등 록 기 준
		<p>나. 소성시설 터널가마 또는 윤요 : 1개소이상</p> <p>다. 운송시설 콘베아 및 기타 운반설비 : 1식</p> <p>라. 기타시설 (1) 용지(당해 생산업에 사용되는 건축물 및 시설·장비등의 설치부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 6천제곱미터이상 (2) 시험실 : 20제곱미터이상 (3) 압축강도시험기(100톤이상) : 1대이상</p>
2. 시멘트가공제품 (시멘트벽돌·속빈시멘트블록)생산업		<p>가. 배합 및 혼연시설 유압기 또는 진동기 : 1대이상</p> <p>나. 양생시설 유압기 1대 또는 진동기 3대마다 다음중 1이상의 설비 (1) 증기양생실 : 60제곱미터 이상 (2) 양생용스프링클러 : 9개소이상 (3) 기타 양생능력이(1)또는 (2)와 동등이상인 것으로 인정되는 설비</p> <p>다. 기타시설 (1) 용 지 : 1천500제곱미터이상 (2) 시험실 : 20제곱미터이상 (3) 압축강도시험기(60톤이상) : 1대이상</p>
3. 콘크리트제품 생산업	콘크리트 조립식 부재	<p>가. 배합 및 성형시설 (1) 뱃차프랜트설비 : 1식 (2) 파렛트 및 주형 : 1식 (3) 철근가공설비 : 1식</p> <p>나. 양생시설 증기양생설비 : 1식</p>

업종별		등록기준
3. 콘크리트제품생산업	콘크리트 조립식부재	<p>다. 운송시설</p> <p>이동크레인 및 기타 운반설비 : 1식</p> <p>라. 기타시설</p> <p>(1)용 지 : 9천제곱미터이상</p> <p>(2)시험실 : 30제곱미터이상</p> <p>(3)압축강도시험기(100톤이상) : 1대이상</p> <p>(4)스트롱후레임시험기(100톤이상) : 1대이상</p>
	경량기포 콘크리트 조립식부재	<p>가. 배합 및 성형시설</p> <p>(1)배합 및 혼합설비 : 1식</p> <p>(2)성형설비 : 1식</p> <p>(3)절단 및 마감설비 : 1식</p> <p>나. 양생시설</p> <p>오토클레이브양생설비 : 1식</p> <p>다. 운송시설</p> <p>이동크레인 및 기타 운반설비 : 1식</p> <p>라. 기타시설</p> <p>(1)용 지 : 9천제곱미터이상</p> <p>(2)시험실 : 30제곱미터이상</p> <p>(3)압축강도시험기(60톤이상) : 1대이상</p> <p>(4)패널의 휨강도시험기(20톤이상) : 1대이상</p>

□ 개정이유 □

경제행정규제완화추진대책의 일환으로 주택단지안의 구매시설이나 유치원 등 일부 복리시설의 설치기준을 완화하고, 주택자재생산업의 등록대상품목을 축소하는 등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여 주택건설과 관련하여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 가. 종전에는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공장으로부터 50미터이상 띄우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공해배출의 정도가 비교적 적은도시형 업종의공장은 30미터 이상만 띄워 건설할 수 있도록하되, 공장과 공동주택의 사이에는 수림대를 설치하도록 하여 주거환경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함(령 제9조제2항 및 제3항).
- 나. 주택단지의 입구에 당해 주택을 건설한 사업주체·설계자·시공회사등의 이름을 적은 기록탑을 설치·보존하도록하여 사업주체·시공회사 등이 주택을 건설함에 있어서 보다 책임감 있게 주택을 건설하게 하고, 아울러 부실시공을 막을 수 있도록 함(령 제31조제4항).
- 다. 종전에는 100세대이상의 주택단지안에는 구매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였으나, 이미 주택단지의 인근에 기존 상권이 형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구매시설의 중복설치는 불필요하므로 단지의 실정에 따라 그 설치여부를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인 바, 앞으로는 주택단지에서의 구매시설의 설치는 사업주체가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도록 함(령 제50조 및 제51조).
- 라. 종전에는 500세대이상의 주택단지에는 일정규모이상의 유치원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1천세대이상인 주택단지에 한하여 학교시설·설비기준령에 적합한 규모의 유치원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함(령제52조제1항 및 제2항).

마. 종전에는 벽돌·블록·기와·창호·콘크리트조립식부재 등 18개품목의 주택자재에 대하여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생산업등록을 받아 생산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주택의 주요 구조재로 사용되는 콘크리트조립식부재·보통벽돌·시멘트벽돌등 5개품목은 종전처럼 계속하여 등록대상품목으로 유지하되, 주요 구조재로 사용되지 아니하는 나머지 13개품목은 건설기술관리법 등 다른 법령에서도 품질시험을 의무화하고 있어 품질관리에 별다른 문제가 없으므로 이를 등록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령 별표2). <법제처 제공>

보는데서 즐기보다 안본데서 안버리기